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7년 월 일
제 출 자 : 함 명섭 의원외 5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국내여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여비지급기준 「별표1」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제4조와 관련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함(안 별표1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비고 1호의 "출석"을 "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1]</p> <p>비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<u>출석</u> 및 여행(군내에서의 <u>출석</u>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<u>출석</u>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2. 생략.</p>	<p>[별표1]</p> <p>비고 : 1. -----출장 -----출장-- -----출장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생략.</p>